

#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관한 건

☒ **신 청 인** : 0000 입주자 대표회

## ☒ **민원내용**

- 한쪽에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고, 관리가 안되는 부지가 있어 00의 소유부지로 인지하고 정비하여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했다함 (00동 00-0번지 47m<sup>2</sup>, 2~3대 정도 주차 가능)
- 따라서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상금의 감액을 요청

## ☒ **현황**

- 2014.0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소유 부지에 주차장 조성에 관한 유선 민원제기 → 현장에 출장하여 국유지 사용중지 통보
- 2020.07.07.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 및 불법점유에 대한 조치사항 정보공개 요청 → 2014. 당시 조치사항 공문이 없어 “정보부존재” 통보
- 2020.07.14.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결과통보 요청 민원제기 → 현장 출장하여 2014년부터 무단점유 확인, 국유재산법에 따라 측량 후 변상금 부과 계획 통보
- 2020.10.20.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00동 00-0번지 현황 측량
- 2020.10.29. 무단점유에 따른 5년간 변상금(4,987,430원)부과 사전통지

## 📌 변상금 부과내역

지번	무단 사용 면적	사용 유형	변상금 부과액	부과기간
소계			4,987,430원(원단위 절사)	2015.07.15.~2020.07.14
○○동 △-△	47m <sup>2</sup>	주거	<연도별 변상금 산출내역> 2020년도 : 990,000원*47m <sup>2</sup> *0.02*196/365*120% = 599,663원 2019년도 : 921,800원*47m <sup>2</sup> *0.02*365/365*120% = 1,039,790원 2018년도 : 875,200원*47m <sup>2</sup> *0.02*365/365*120% = 987,226원 2017년도 : 861,100원*47m <sup>2</sup> *0.02*365/365*120% = 971,321원 2016년도 : 850,800원*47m <sup>2</sup> *0.02*365/365*120% = 959,702원 2015년도 : 822,800원*47m <sup>2</sup> *0.02*169/365*120% = 429,733원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산정 방법 : 사용료\*120%

→ 사용료=당해년도 공시지가\*점유면적\*사용요율\*사용일수

cf. 사용요율 : 경작용(10/1000 이상), 주거용(20/1000 이상),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30/1000이상)

## 📌 현장 · 확인사항

○ 위치 : 안양시 ○○동 ○○-○(47m<sup>2</sup>)

## 📌 관련규정 확인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1.~2.생략

②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 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 ○ 대법원 선고 96다 19512 판결

#### [판결요지]

(1)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고,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판 단

- 2014년 OO 입주자 대표회에서 OO 뒤편 공동소유 유희지를 주차장으로 정비시 인근 국유지를 착오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함
- 해당부서에서는 2014.9월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에서 국유지 사용중지를 구두로 통보한 사례가 있음. 그 이후 2020.7월 국유지 무단점유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이 있었고, 2014년 당시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근거가 없어 정보부존재를 통보함에 이에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결과통보 요청 민원 제기 후 2014년부터 무단점유로 확인, 국유재산법에 따라 측량 후 입주자 대표회에 변상금 부과 계획 통보 후 사전통지한 사항임

- 2014년 국유지 사용중지에 대한 민원을 공식화하여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행정조치 미흡과 OO ▽ ▽세대 전체의 무단점유 부지이용에 있어서 무단점유의 관계는 부당하다고 보여짐

이는 OO 거주자 중 차량소유자와 특별한 통제가 없는 출입구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차량을 소유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도 무작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단점유지는 47m<sup>2</sup>는 협소한 부지로 2~3대 정도만 사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독점적으로 부지를 무단점유한 자를 특정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이용자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OO 입주자 전체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OO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측량된 무단점유 국유지 사용을 금지하고 원상복구 할 것이며, 부서에서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권고함

#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민원

 신청인 : 김OO

## 민원내용

- 전입신고 전 주민센터 직원의 상담을 통해, 출생신고 6개월 이후 출산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2019년 4월말 OO동으로 전입하였으나 둘째아 출산지원금(2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 ▶ 2019. 4. 25 : 둘째아 출산
  - ▶ 2019. 4. 29 : 출생신고 및 전입(OO구 → 안양시)

## 관련규정 확인

- 안양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 지원규모

구분	안양시	OO구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70만원
넷째아	500만원	100만원

## 관련부서(만안보건과) 의견

- 신청인 김OO의 억울함은 인정되나, 규정(자치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음

## 담당자 의견

- OO동 주민센터에서 전입 및 둘째아 출생신고 시, 담당자의 명확한 안내만 있었다더라도 OO구에서 출산지원금(50만원)을 지원 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 김OO는 우리시에 전입하여 5월부터 첫째아가 유치원을 다니는 등 7개월 이상 정착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양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이 좋을 것임

## 판 단

- 민원인 김OO는 2019년도에 OO구에서 안양시로 전입하였으나, 전입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 직원의 명확치 못한 안내로 인하여 둘째아 출산에 대한 지원금(200만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
-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출산을 꺼리는 부부에 대한 유인책으로 각 지자체마다 형편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하나임
- 전입업무 담당자와 민원인 김OO와의 상담 중 정확치 않은 안내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항에 이르게 되었으며, 규정에 가로막혀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자치법규 제정의 취지를 살려 출산을 장려하는 적극적 행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민원인 김OO가 안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보건소와 전입(출생)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시민에게 촘촘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